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5. 12.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4. 5. 20.
-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이 춘기)

가. 제출이유

-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741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동장의 임용자격을 변경·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동 조례의 법규의 동일성을 확보코자 하며,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에 따라 동 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사무소의 동장을 종전에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포함.(안, 제2조 제1항)
- 도화제1동사무소 소재지를 “도화동 362-14”로, 용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용강동 259-1”로 각각 변경.(안, 제4조 별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진재)

○ 동 조례안 동장 임용 자격의 변경은 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개정 임.

○ 현재 재직중인 동장의 신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읍·면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법 시행 당시의 재직중인 동장은 임기 만료일 이나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직화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유남렬 위원) : 지금부터 보임되는 동장은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되는가? 그리고 기존의 동장은 어떻게 되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이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동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기존의 동장은 임기 또는 정년퇴임일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 질문(김문태 위원) : 그러면 동장과 구청과장이 순환 보직되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구청과장과 동장은 같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순환 보직이 가능합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년월일 : 1994. 5. 12.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개정이유

1994. 3. 16일자 지방자치법중 개정법
률(법률 제4741호)이 공포·시행됨에 따
라 종전과 달라진 동장의 임용자격을 변
경·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동조례의 법규
의 동일성을 확보코자 하며,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에 따라 동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임.

2. 개정 주요골자

- 동사무소의 동장을 종전에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포함(안, 제2조
제1항)
- 도화 제1동사무소 소재지를 “도화동
362-14”로 용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용강동 259-1”로 각각 변경(안, 제4
조,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
호) 제6조, 제15조, 제109조 제2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1)의 동사무소의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도화제1동과 용강동의 동사무
소 소재지란의 “도화동 185-26”을 “도화
동 362-14”로, “용강동 54”를 “용강동
259-1”로 각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항은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중 도화제1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4년 1월 24일부터, 용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3년 12월 23일부터 각각 적용한
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동장)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생략)		제2조(동장)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관할
마포구	(생략)				마포구	(현행과 같음)			
	도화 제1동	도화동 185-26		(생략)		도화 제1동	도화동 362-14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용강동	용강동 54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생략)		용강동	용강동 259-1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